

2026년 제1회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2026년 제1회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구분	응시번호	성명
최종합격자	2026-01-10	김 ○ 령

구분	응시번호	응시번호
예비합격자(1순위)	2026-01-07	조 ○ 경
예비합격자(2순위)	2026-01-03	최 ○ 혜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9. 16.(수) ~ 2026. 9. 18.(금)

- 장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4층 행정지원팀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다.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약식) 1부(붙임1 : 별지 제21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3)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4)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영수증 첨부 함께 제출)
 - ※ 채용합격자 발표일 이후 검사, 사진부착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사진(반명합판 3cmX4cm) 2매

라. 등록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기일이 촉박하여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추후 보완 가능(발급 서류 외 본인 기재서류는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마.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임용포기확인서【별도서식5】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220-2111)

【붙임1】 [별지 제21호서식]

신원진술서(약식)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대폰 : E-mail :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업체 및 정당·사회단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별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간	병과	최종 계급	미필 사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유의사항>

- ①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신원진술서는 1부를 작성합니다.
- ③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파일 이용 시 반드시 칼라로 출력)
-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소 ☐ 실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직장명 및 소재지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합니다.

☐ 학력

본인의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학교명 :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 학위 :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 :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동·면단위까지 적습니다.)

☐ 경력

- 본인의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외거주사실

여행 목적이 아닌 해외거주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 병역관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군별, 병과, 최종계급,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 미필사유 :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연령미달, 입영연기중,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본인의 자녀를 기재합니다.

○ 기재 순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순으로 기재합니다.

□ 기타 작성 시 주의사항

신원진술서 상의 하단의 ‘서명’ 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 은 반드시 모두 같아야 합니다.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여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 병적자료(병무청) -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4】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